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인권교육원 설치〉

■ 이재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30호)

2024. 9.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재강 · 윤종균 · 양문석 · 김우영 · 정을호 · 문금주
서미화 · 김문수 · 김 윤 · 복기왕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4. 8. 12.

3. 회 부 일 : 2024. 8. 13.

※ 의안번호 : 27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 법률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더구나 타 법률의 인권 교육과정은 통일되어 있지 않아 관련 교육 대상자들이 인권에 관한 지식을 체득하기에 미흡하고 전문적인 교육 연수기관의 별도 설치를 통하여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를 양성하고, 인권교육 대상자 및 관련 공무원,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며, 국내 인권교육을 통합적으로 기획·관리·개선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인권 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효과를 강화시키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교육원을 설립하고 인권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강사 양성, 인권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인권 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의2(국가인권교육원) ① 위원회는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인권교육원을 둔다. ② 국가인권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강사 양성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등 인권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3. 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의 지원 및 관리 4. 인권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5. 그 밖에 국가인권교육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국가인권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그 밖에 인권교육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5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수행 업무로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하고 있고, 제26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인권교육을 소관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은 인권 관련 연구·조사 사무, 진정의 조사 및 해결 등 그동안 축적된 인권 관련 사항을 확산 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인권의식 수준을 상승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²⁾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은 사무처의 하부조직³⁾인 정책교육국(보조기관) 밑에 설치된 교육협력심의관(보좌기관) 및 인권교육기획과·인권교육운영과(보조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군인권교육과 관련해서는 사무처의 하부조직인 군인권보호국(보조기관) 밑에 설치된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①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인권에 관한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 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군인권침해를 개선·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2020, p.143

3) ‘하부조직’이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말함.

군인권협력지원과(보조기관)에서 분장 업무의 일부로 담당하고 있음.4)

4)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하부조직) 사무처에 운영지원과, 인권상담조정센터, 정책교육국, 침해조사국, 차별시정국 및 군인권보호국을 두고, 사무총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제8조(정책교육국) ② 정책교육국장 밑에 교육협력심의관을 두며, 교육협력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교육협력심의관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정책교육국에 인권정책과, 사회인권과, 국제인권과, 인권교육기획과, 인권교육운영과 및 홍보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⑧ 인권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군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협력 및 시행
2. 인권교육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인권교육 강화 관련 국내외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교류·협력
4. 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5. 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분석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6.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등의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
8. 인권 관련 자료·정보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9. 도서관 자료의 열람·대출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10. 국내외 도서관 등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11. 간행물의 관리
12. 그 밖에 인권교육운영과 소관에 속하지 않는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⑨ 인권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주관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및 운영계획의 수립·시행·평가
2.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성과정의 운영·관리
3. 인권교육과정의 개발·운영
4. 사이버 인권교육시스템의 개발·관리 및 연수과정의 운영
5. 인권교육 관련 통계의 유지·관리
6. 그 밖에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의3(군인권보호국) ② 군인권보호국에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및 군인권협력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⑤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인권 침해를 개선·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이하 이 항에서 “군인권교육”이라 한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협력 및 시행
2. 군인권교육과 관련된 법령·제도·정책·관행에 관한 조사·연구
3. 제2호의 조사·연구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4. 군인권교육 실시 등을 위한 협의에 관한 사항
5. 군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분석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6. 군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등(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의 개발·보급 및 관리
7. 군 인권 침해 중 성차별·성희롱 관련 사항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8. 제7호의 조사·연구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9. 군 인권 침해 중 성차별·성희롱 행위로 인한 침해에 관한 조사 및 구제
10. 제9호의 조사와 관련된 정책·제도의 개선,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진정인·증인의 보호
11. 군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협력

[표-2] 현재 인권교육 관련 조직 및 정원 현황

조 직	정 원	
정책교육국 교육협력심의관(보좌기관)	1명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1명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기획과(보조기관)	11명	4급 1명, 4·5급 1명, 5급 5명, 6급 이하 4명 (인권도서관 3명 포함)
정책교육국 인권교육운영과(보조기관)	7명	4급 1명, 5급 1명, 6급 이하 5명
군인권보호국 군인권협력지원과(보조기관)	2명	5급 1명, 6급 이하 1명 (군인권교육 관련 인력)
계	21명	-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문화 공간 마련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하여 ‘인권교육원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4년 3월 착공하여 2025년 11월 준공하고 2026년 상반기에 개원할 예정임(참고자료 참조).⁵⁾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관련 조직 편제와 관련하여 인권교육기획과 및 인권교육운영과가 업무의 성격이 다른 정책과 교육을 담당하는 정책교육국⁶⁾ 산하에 설치되어 있어 전(全) 국가적으로 인권교육이 증가하고 사회 전 영역으로 확

5) ◦ 사업명: 인권교육원 신축

◦ 위 치: 경기 용인시 신갈로 114(신갈동 17-7)

◦ 규 모: 대지 4,610㎡, 연면적 4,637.16㎡, 지상 3층~지하 1층

6) 정책교육국에는 인권정책과, 사회인권과, 국제인권과, 인권교육기획과, 인권교육운영과, 홍보협력과의 6개 과단위 조직이 있음.

산되는 추세에 맞는 전략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⁷⁾

이에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부속기관⁸⁾으로 국가인권교육원을 설치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통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인권교육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고 인권교육을 내실화·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관의 명칭 및 원장의 직급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그 명칭을 ‘국가인권교육원’으로 하고 원장의 직급을 ‘고위공무원단’으로 규정하고 있음.

① 원장의 직급의 경우 국가인권교육원의 소관 업무와 다른 주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기관장 직급과 비교할 때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② 기관의 명칭의 경우 상위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혼동될 수

7)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의 적시성, 적절성, 효과성 확보 3: 인권교육 혁신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2018, pp.132~133

8) 부속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부속하여 그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하며 시험연구·교육훈련·문화·의료·제조·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법무연수원, 청렴연수원 등이 이에 해당함. 참고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합하여 소속기관이라고 함.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부속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부속기관의 장의 직급은 그 기관의 규모와 소관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배정하고, 직무등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며, 기관장과의 근무교대제의 운영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관장을 둘 수 없다.

③자문기관을 제외한 부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부속기관 중 시험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기준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있는 점, 다른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은 그 명칭에 ‘국가’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점, 원장의 직급(고위공무원단)과 통상적으로 비례하는 명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명칭에서 ‘국가’라는 용어는 삭제하고 ‘인권교육원’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⁹⁾

[표-3] 주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현황

소 속	기관명	기관장 직급	주요 기능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차관급	국가공무원 기본·전문교육
외교부	국립외교원	차관급	전문외교관 양성
법무부	법무연수원	차관급	법무행정 전문인력 양성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고위 가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고위 나급	교육분야 전문인력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인재개발원	고위 나급	우정 전문인력 양성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고위 나급	민방위·방재 전문인력 양성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고위 나급	농업·식품 분야 전문교육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고위 나급	환경분야 전문인력 양성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위 나급	국세 전문인력 양성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고위 나급	관세 전문인력 양성
통계청	통계교육원	고위 나급	통계분야 전문교육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	고위 나급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
산림청	산림교육원	고위 나급	산림분야 전문교육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고위 나급	지식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감사원	감사교육원	고위 나급	감사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	고위 나급	경호안전 분야 전문가 양성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과장급	국토·교통 분야 전문교육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과장급	해양수산공무원 교육
조달청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과장급	조달분야 전문교육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과장급	기상분야 전문교육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과장급	농업기술 전문교육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과장급	공무원 반부패·청렴교육

* 자료: 인사혁신처 제공자료 재구성

9) 현행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된 소속기관으로 ‘인권사무소’가 있음.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실무적으로 인권교육원 설립 시 원장의 직급은 일반직 고위공무원(나등급)으로 하고 조직 규모는 4개 과단위 조직(인권교육기획과, 인권교육콘텐츠과, 인권교육운영1과, 인권교육운영2과)으로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정원 등은 2025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또한, 인권교육원 운영 예산은 2024년 인권교육 관련 사업예산(계속사업, 20억 6,000만원)을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둘째, 국가인권교육원의 설치 근거와 관련하여, 「정부조직법」 제4조10)는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교육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부속기관의 성격에 해당하므로 대통령령(직제)에 설치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그런데, 부속기관인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근거를 대통령령에 두고 있는 경우(법무연수원, 우정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등)도 있는 반면,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입법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립외교원, 감사교육원 등)¹¹⁾도 존재하여 부속기관의 설치 근거를 반드시 대통령령에 두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법제적 측면에서, ① 개정안 제26조의2제1항은 국가인권교육원의 설치 근거를 ‘위원회는……위하여 국가인권교육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관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속을 명시하여 ‘○○○에 ○○○를 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이에 맞추

10)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11)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①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한다.

「국립외교원법」 제2조(설치)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둔다.

「감사원법」 제19조의2(직무 및 조직) ① 감사원 소속 직원 및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교육원을 둔다.

어 법문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② 개정안 제2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국가인권교육원의 수행 업무를 열거하면서 제5호에서 ‘그 밖에 국가인권교육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인권교육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열거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 밖의 수행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5호에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③ 개정안 제26조의2제5항은 국가인권교육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설치 근거는 이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인권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¹²⁾

12) 국가인권교육원의 명칭 변경(인권교육원)을 포함한 법제적 측면의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개 정 안	수정의견
제26조의2(국가인권교육원) ① <u>위원회</u> 는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u>국가인권교육원</u> 을 둔다.	제26조의2(인권교육원) ①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u>위원회</u> 에 <u>인권교육원</u> 을 둔다.
② <u>국가인권교육원</u>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u>인권교육원</u>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략)	1. ~ 4. (개정안과 같음)
5. <u>그 밖에 국가인권교육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u>	5. <u>그 밖에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u>
③ 국가인권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인권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u>그 밖에 인권교육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인권교육원의 <u>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u>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7조제4항에서 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도서관의 설치 여부·위치·개수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이 임의적이기 때문임.

「감사원법」 제19조의2(직무 및 조직) ① 감사원 소속 직원 및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

넷째,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국가인권교육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법 시행 전에 대통령령의 정비가 필요하고, 조직 규모 및 정원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협의 및 실제 인력 배치 등 준비행위도 필요하므로, 공포 후 3개월이 법 시행에 필요한 적절한 기간인지 검토가 필요함.

참고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제1항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율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017

또는 회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교육원을 둔다.

②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 추진경과

- 2020. 3.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신규) 제출
- 2020. 12.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226백만원(기본설계비) 반영
- 2021. 9. 설계공모
- 2021. 12. 기본설계 완료
- 2022. 12. 실시설계 완료
- 2023. 1. 건축허가
- 2024. 2. 감리 및 각종 공사 계약 추진
- 2024. 3. 공사 착공
- 2024. 8.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 진행 중
- ※ 2025. 11. 준공 / 2026. 개원 예정

○ 위 치: 경기 용인시 신갈로 114(신갈동 17-7)

○ 규 모: 대지 4,610㎡, 연면적 4,637.16㎡, 지상 3층~지하 1층

○ 세부시설: 각종 강의실, 연구실, 토의실, 강사실, (온-오프 융합교육)스튜디오, 영상 체험실, 전시홀, 콘서트홀, 정보/홍보실, 사무실, 회의실 등

○ 사업기간: 2021년 ~ 2025년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집행액 (2021~2023)				2024 예산 (현액)	2025 예산안
	2021	2022	2023	소계		
총 계	226	499	-	725	5,430	8,543
기본조사 설계비	226	-	-	226	-	-
실시설계비	-	499	-	499	-	-
공사비	-	-	-	-	4,195	7,381
감리비	-	-	-	-	1,214	1,142
시설부대비	-	-	-	-	21	20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